<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682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개경쟁채용 공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근무할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채용직종 및 채용인원

채용실시기관	직 종	주요 담당업무	근무예정기관	근무예정지	채용예정인원
국가건축정책기획단	공무직 근로자 (사무보조원)	행사 등 행정업무 지원 및 관용차량 운전 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종로구	1명
국가건축정책기획단	기간제 근로자 (사무보조원)	청사·보안 및 기록물·물품 관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종로구	1명

2.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예정)**

○ **공무직** : 채용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 **기간제근로자**(휴직대체) : ‘25.7.14 ~ ’26.12.31

* 계약기간은 채용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제4항)

나. **근무시간 : 주 40시간**(주5일, 일별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다. **보　　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단 공무직 보수기준에 따라 지급

* '25년 기준 기본급(2,400천원/월), 정액급식비(140천원/월), 명절휴가비(기본급의 60%/연, 2회로 나눠 지급), 시간외 수당 별도

라. **후생복지** : 건강・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복지포인트 지급

3. 응시 자격요건(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가. **공통요건**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아래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③ 만 18세 이상인 자로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④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⑤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공무직에 한함**)

나. 우대조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에만 반영)

구 분	우대사항
공무직 근로자 (사무보조원)	ㅇ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 후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운전경력이 있는 자 ㅇ 운전경력증명서 상 최근 5년 이내 무사고 운전 및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법규 위반 경력이 없는 자 ㅇ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사무' 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종전1급) * 등급별 자격을 중복으로 보유한 경우 상위 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ㅇ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사무' 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종전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소지자 * 등급별 자격을 중복으로 보유한 경우 상위 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다. 가산조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에만 반영)

ㅇ 장애인에 대해서 가점 부여(만점의 5%)

🗁 **장애인 대상자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소유자

4. 시험 방법

가. 서류 전형(1차)

ㅇ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일 때 소극적 서류전형(응시요건 적격 여부 판단)을 실시함

○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을 통해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적극적 서류전형을 하는 경우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단, 동점자는 전원 합격)

나. 면접 심사(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각 평정요소*를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 평정요소마다 상, 중, 하로 평가하여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가 있을 경우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결정, 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면접위원 제척사유**

○ 응시자는 평가위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시험주관부서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응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1. 친인척: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근무경험 관계: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3. 사제지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될 만한 친분 등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조회, 우대사항 증빙자료 확인 등을 거쳐 최종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

○ 차순위 성적 우수자가 동점자시 동점자를 대상으로 재면접 실시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6. 시험 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5. 6. 5.(목)

나. 면접시험 : '25. 6. 11.(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면접일정, 장소 등 세부사항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5. 6. 19.(목)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채용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국토교통부 및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시간) '25.5.19.(월) ~ 5.27.(화), 09:00 ~ 18:00

나.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 중 접수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직접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① **공무직 근로자** 지원의 경우 **"공무직 근로자(사무보조원) 응시원서 재중"**, ② **기간제 근로자** 지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응시원서 재중"** 표기

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6층 국가건축정책위원회 (03185)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마.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고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 결격사유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시 14일 이내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청구 기간 이후에는 채용서류를 모두 파기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02-397-55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비리 관련 >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표준기준 제2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붙임 **제출서류 안내**

연번	서류명	비고	해당
1	응시원서 1부	서식1-1(공무직) 서식1-2(기간제)	전원
2	자기소개서 1부	서식2	전원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3	전원
4	이력서 1부	서식4	전원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5	전원
6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서식6	전원
7	운전면허등록증 사본 1부		공무직
8	주민등록 초본 1부 (공고일이후 발행분, 주민번호 전체 현출)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전원
9	운전경력 증명서 1부	ㅇ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ㅇ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ㅇ군 경력의 경우 '군운전경력 확인서' 제출	공무직 해당자
10	운전경력증명서 1부 (공고일이후 발행분, 조회기간 전체)	ㅇ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정부24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운전면허경력 기간, 법규위반 기간, 교통사고 기간을 반드시 전체 경력으로 조회하여 발급 *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증명서 또는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에는 불인정 할 수 있음	공무직 해당자
11	사무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12	가산요건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 상기번호 순서대로 정리한후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서식 1-1]

응 시 원 서

본인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성명	(한글) (서명)
응시직종	사무보조원		
모집단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화		휴대전화	

㊞

응 시 표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응시직종	사무보조원
성명	(한글)	(한자)	
2025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서식 1-2]

응 시 원 서

본인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성명	(한글) (서명)
응시직종	사무보조원		
모집단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화		휴대전화	

㊞

응 시 표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응시직종	사무보조원
성명	(한글)	(한자)	
2025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서식 2]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직종	사무보조원	모집단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성명		생년월일			

◎ 자 기 소 개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ㅇ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품, 직무 관련 분야에서의 주요 실적 및 성공사례, 대인관계,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휴먼명조체 13 Point로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

※ 면접시험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서식 3]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직종		모집단위	
성명		생년월일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직무수행계획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분야와 연계하여 직무에 대한 이해, 소견 및 응시 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구체적인 실천 방안 순으로 작성합니다.

※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

※ 휴먼명조체 13 Point로 작성

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서식 4]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직종		모집 단위		성 명	

나. 우대사항 (해당하는 경우 작성)			
자격증·면허증	자격 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

다. 가산점 (해당하는 경우 작성)				
	구 분	교부기관	발급일자	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자격사항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이용 가능

※ 자격·면허는 증명서를 제출한 사항만을 기재하며,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본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7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 (자격증·경력·국적) 확인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 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4)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고유식별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식 6]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응시번호	응시직종	모집단위	생년월일	성 명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 . .

성명 :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별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